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자원(주) 생산직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우 제2,3,4,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2)우수 제2,3,4,5지 신전건 및 제5지 굴곡건 파열 및 근육 좌멸창”이 발생한 경우

(91-631호 91. 12. 23.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

주소 : 포항시

원 처 분 청 :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자원(주)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8. 30.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등급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자원(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1. 13.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우 제2,3,4,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2)우수 제2,3,4,5지 신전건 및 제5지 굴곡건 파열 및 근육 좌멸창”으로 포항선린병원 등에서 요양치료 후 1991. 5. 6.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접합 수술후에 잔존하는 두군데의 철사로 인해 통증과 후유증으로 생업에 종사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1. 20.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11. 21.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8. 21. 김○○)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8. 30.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10. 30.)
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1. 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우 제2,3,4,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2)우수 제2,3,4,5지 신전건 및 제5지 굴곡건 파열 및 근육 좌멸창”으로 포항선린병원에서 요양가료 후 1991. 5. 5. 치료 종결되었는 바 포항 선린병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우 제2,3,4,5수지 각 관절의 신전운동은 모두 정상이나 굴곡운동은 제2지 중수수지관절 135도, 근위지절관절 105도, 원위지절관절 130도, 제3지 중수지관절 120도, 근위지절관절 120도, 원위지관절 130도, 제4지 중수수지관절 140도, 근위지절관절 105도, 원위지절관절 130도, 제5지 중수지절관절 145도, 근위지절관절 110도, 원위지절관절 145도로 제한됨”이며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우수 제2지-제5지의 각 관절의 신전운동은 정상영역이나 굴곡운동은 120도-130도로 제한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애는 우수 제2,3,4,5지 각 관절에 운동이 제한되나 각 관절 운동 가능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또는 3/4미만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로 판단될 뿐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산업 생산직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우수 근건 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손목염좌, 3)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우측 요·척골 원위부 탈구(의증)”이 발생한 경우

(91-638호 91. 12. 23.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홍 ○ ○  
주소 : 부산시 북구

원 처 분 청 :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 로 자 성 명 : 상 동

주소 :       
소속 : ○○산업

## 주      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9. 3.자 “홍○○”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홍○○”(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9. 3.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0. 25.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 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척골 원위부 탈구(의증)”으로 세일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8. 1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고 정중 및 척골 신경마디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어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및 제12급에 해당은 되나 신경증상은 손가락 기능장애에 수반하는 장해라는 이유로 손가락 장해만을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급 7호를 적용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통증

과 운동제한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제10급 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1. 20. 홍○○)
2. 답변서(1991. 11. 31.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8. . 홍○○)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9. 3.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10. 26.)
6. 진단서 사본(1991. 8. 13. 세일병원)
7. 소견서 사본(1991. 9. . 원처분청 자문의)
8. 기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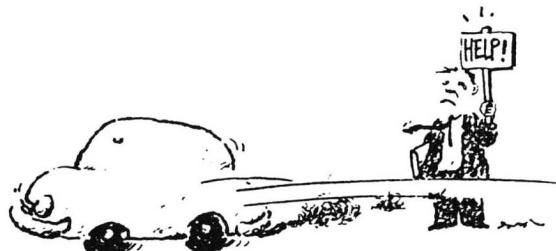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0. 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 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척골 원위부 탈구(의증)”으로 세일병원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8. 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세일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 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3,4,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애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 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3,4,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

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 장해에 수반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 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 보건

## 아낌없는 조언



누구든지 자기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한 느낌이 들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생활의 간섭은 더욱 급물입니다. 상대방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전에는 되도록이면 칠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업무 밖이라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부서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달라져 봅시다.

동료가 의논 상대가 되어 줄 것을 바라면 기꺼이 응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미덕을 가집시다.

공적인 일은 물론 사적인 일에서도 말입니다.

개인이나 부서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조하는 마음을 가지 때 우리의 일터는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